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로 보이나 부분적 후공절제 및 부분적 관절절제와 함께 신경공 확장을 하는 정도의 수술에서부터 골유합술 및 기기고정에 이르기까지 수술의 방법은 실제 수술을 시행할 의과외과가 결정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현재의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골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 2인은 요추부 방사선사진상 제3-4 및 4-5요추간 추간관탈출증 등 인접척추관 협착이 동반되어 후공절제술이나 신경공 확장 수술만 시행할 경우 척추의 불안정성이 유발되어 심한 신경마비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MRI 필름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제3-4 및 4-5요추간추간관탈출 등으로 인해 척추관이 협착되어 후공절제술이나 신경공 확장 수술만 시행할 경우 척추의 불안정성이 유발되어 심한 신경마비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상병상태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므로 인접척추관 협착의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청구인의 상병상태로 보아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도

(031-877-7582-3)

Q 제3-4, 4-5요추간관탈출증으로 척추관이 협착 되어 후공절제술이나 신경공 확장 수술만으로는 척추의 불안정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척추기기고정술을 인정한 경우는?

A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10, 11번 늑골골절, 고관절염좌, 우측흉부혈흉, 우측제1번흉물기골절, 제3-4및4-5요추간관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중 제3-4, 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기기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응인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사고 이후 임원요양하면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치료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며, 특진결과 반드시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은 아니라고 하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저는 매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소유인 냉동기 등 5종의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공증하였고, 동시에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공증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는 기금기일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5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제가 위 공증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하고자 합니다. 만일, 매의 다른 채권자가 위 기계에 대해 압류할 경우 제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귀하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증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시작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 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 할 수도 있다.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강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한·방·상·식

의정부 수 한방병원 병원장 /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만 돈 많이 벌어도 허리가 부실한 서방은 찬 밥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진리인 것 같다. 그럼 진짜 허리와 성기능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만일 관련이 있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인체의 성기능 이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요즘에는 심리적인 이유로 인한 성기능 장애가 많지만 우선적으로는 신체적인 결함 즉, 기질적으로 신경계나 내분비계, 순환기계, 또는 비뇨 생식기계의 손상을 들 수 있다. 한방에서는 양기(陽氣)와 음기(陰氣)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인을 찾지만 척추의 이상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이다. <다음호에 계속>

척추이상과 성기능 장애 ①

회사 친선 축구대회에서 나이답지 않게 날렵한 솜씨로 골을 몰던 남자가 그만 상대 팀의 과격한 태클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동료들에 의해 벤치로 이끌려 나오던 그를 보고 그의 아내가 달려오며 하는 말 "여보, 허리

는 괜찮아? 안 다쳤어?" 피는 머리와 팔다리에서 나오 있었는데 말이다. 우스개소린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허리와 성기능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돈도 못 벌어도 허리가 실한 서방은 매일 뜨신 밥 먹고, 밥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청소년의 이성교제

Q 이제 조금 있을 중학생이 되는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벌써부터 딸이 남자 친구를 사귀는 것 같은데, 100일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도 적음이 안 되는지 자주 비추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A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에 대한 개방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있습니다. 요즘의 이성교제는 문제 청소년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보는 기성세대의 고정 관념과는 달리 최근의 추세

점점 보편화되고 연소화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당연한 발달과정입니다. 어른들의 관점에서 이성교제를 한다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지켜보는 가운데 건강한 이성교제를 한다면, 그건 오히려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몇몇 청소년들에게서 좋지 않은 이성교제의 형태를 보게 되는 것은 어른들이 지나치게 억압한다거나 숨기면서 교제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대체로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진지하다거나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일단 배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호기심에 만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헤어지고 따라서 어떤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헤어지는 편이 속 편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성인들과 달라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넓게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비록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이성친구와의 만남에 있어서는 분명한 성적주체로서 준비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무조건 금기시하기보다는 올바른 이성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문의: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치과 과장 **오주은**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충치가 심하여 원래보다 치아사이의 간격이 좁아 지거나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이가 상하여 유치를 너무 일찍 빼게 되면 유치가 빠진 공간으로 주위의 치아들이 움직여서 주위 치열이 흐트러지고 공간이 좁아 집니다. 이렇게 되면 잇몸 밑에서 자라고 있는 영구치가 솟아오를 공간이 부족해져 제자리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치열이 삐뚤빼뚤해지고 새로 난 영구치도 충치와 잇몸질환이 잘생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방에 드는 비용이 치료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덜 든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어렸을 때 잘 관리해주어야 어른이 되어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의 충치 관리를 잘 해주어 내 아이가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포천병원 (031-539-9114)

우리아이의 충치관리

현재까지 충치치료의 재료로 쓰이는 것은 아말감, 금, 레진, 도자기 등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재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적합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 치료할 치아가 어느 치아인가, 또 그 치아 중에서도 어느 부위인가, 충치의 정도와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평생 사용하는 영구치의 중요성은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유치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영구치로 갈아타니가 하는 생각으로 유치의 치료를 급히 하지 않고 미루거나 치료재료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저렴한 치료만 원하는 것은 아이의 평생 치아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치가 건강해야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유치를 통하여 적절한 자극이 턱뼈로 전해져야 아이들의 턱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발음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혀가 너무 퍼지지 않도록 가두어 주고 뺨이나 입술이 꺼지지 않도록 영구치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유지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결혼한 딸이 주택이 딸린 상가 건물을 취득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5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취득자금 내용은 남편 적금 2억, 결혼축자금 2억, 은행대출 1억원입니다.

A 귀하의 경우 제일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취득자금의 출처와 취득자금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증여"란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기 때문에 남세의무자는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입니다. 다만, 세법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불우이웃돕기 등에 의하여 증여 받은 재산, 학자금과 장학금 등, 그리고 기금, 축하, 부의금 등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및 혼수용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화화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함)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 적금 2억원은 배우자 증여공제 3억원에 미달하고, 은행대출금

1억원은 대출증명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결혼축자금 2억원에 대하여는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자금 등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세법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실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년전 유사한 소송사례를 소개하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를 결혼축하금이라고 소명함에 대하여, 결혼 축하객을 구분하여 실질에 따라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회저명인사인 아버지에게 귀속된 축하금에 딸에게 받게 된 것으로 보는 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결혼 축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이내라면, 비과세 될 수 있으나, 결혼축하금은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에게 구분하여 귀속되는 바, 그 귀속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결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 전문 고은종합전기

■전기설비 고장발생시 긴급출동 후 보수작업

## 취급 공사

- ▶ 공장
- ▶ APT
- ▶ 빌딩
- ▶ 병원
- ▶ 상가
- ▶ 호텔
- ▶ 가로등
- ▶ 기타 전기공사
- ▶ 소방설비공사



공장확장으로 인한 부하설비 증가로 특별 고압 자가용 수선설비 증설 공사 현장



최 두 열 대표이사

본사: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 전화 : 031)542-9771~4 / Fax : 031)542-1115 / 고은종합전기(주)